

소득과 소비로 본 워킹 푸어의 현실

2010.8.19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소득과 소비지출로 본 워킹 푸어
가구의 현실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4. 글을 마치며



<http://saesay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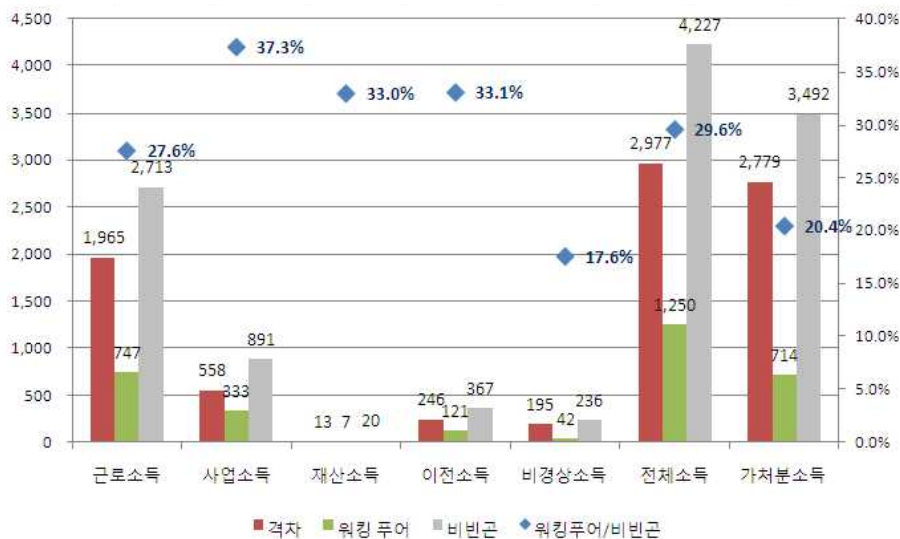
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워킹 푸어 (working poor)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또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전통적 빈곤계층과 달리, 워킹 푸어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빈곤상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 중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9.44%였고, 워킹 푸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2.55%로, 전체 빈곤가구 중 42.63%가 워킹 푸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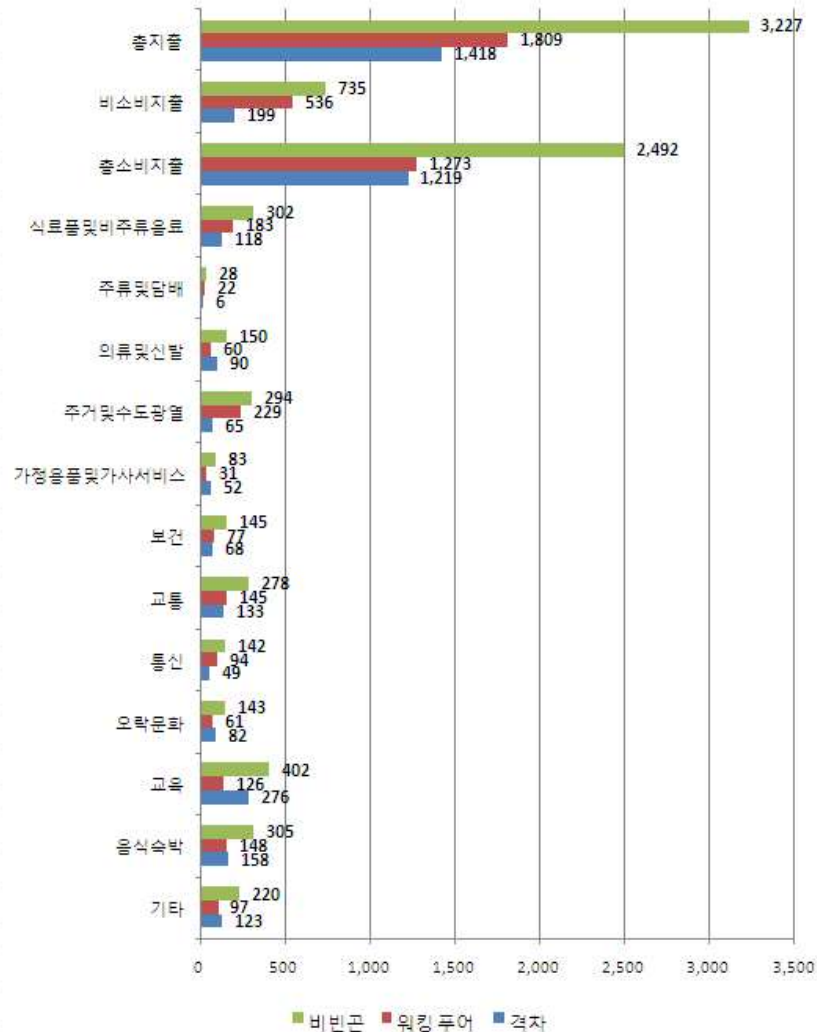
이들 워킹 푸어는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삶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이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빈곤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를 워킹 푸어 가구로 보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균등화 가구소득(가처분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보는 OECD 방식을 통해 빈곤을 설정하고 있다. 분석자료로는 주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한다.

2010년 1분기 국내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소득과 지출 구성은 아래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소득 구성 (단위 : 천원)



[그림 2] 지출 구성 (단위 : 천원)



이에 따르면,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 사이 소비지출에 있어 큰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워킹 푸어 가구는 필요한 가정용품, 가사소모품에 대한 지출이나 의복, 신발과 같은 제품 구입비,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을 제한받고 있으며, 중요한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도 비빈곤가구와 큰 격차를 보인다. 또한 워킹 푸어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80만 9천원으로 월평균 소득 125만원보다 55만원 9천원이나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일을 하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다른 도움 없이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실행,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와 같은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강화는 이 후 경제순환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워킹 푸어, 빈곤계층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의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문

1. 들어가는 글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또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노인, 아동, 여성가구원으로 구성된 전통적 빈곤계층과 달리, 워킹 푸어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빈곤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빈곤계층과 구별된다. 통계청의 가구동향조사를 통해 2010년 1분기 워킹 푸어 가구 및 빈곤가구의 규모를 분석해 보면, 전체 가구 중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9.44%였고, 이 29.44% 중 워킹 푸어가 12.55%, 전통적 빈곤계층이 16.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가구 중 42.63%가 워킹 푸어인 것이다¹⁾.

이러한 워킹 푸어의 존재 및 확대는 정부와 사회의 기존 빈곤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된 빈곤 관련 정책은 절대빈곤가구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2000년 이후 정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일을 할 수 없는 빈곤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 워킹 푸어 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제도로는 2008년 이 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가 있으나, 아직까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원수준이 낮고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워킹 푸어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이들은 삶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이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1분기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워킹 푸어의 경우, 빈곤계층이 아닌 비빈곤가구와 비교해 월평균 소비지출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노동소득의 존재로 전통적 빈곤계층보다는 높은 소득을 얻고 있지만, 비빈곤가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소득은 워킹 푸어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비지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워킹 푸어는 소비지출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1) 워킹 푸어 가구에 속한 구성원들을 워킹 푸어로 보고 인구기준으로 2010년 1분기 국내 워킹 푸어의 규모를 계산해보면, 4,547만명의 전체 인구 중 452만명, 9.93%가 워킹 푸어이다.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와 달리 빈곤계층 중 전통적 빈곤계층(48.04%)보다 워킹 푸어(51.96%)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현 (2010b)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 현실태, 새사연” 참조

월평균 가처분 소득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소비지출보다 소득이 작은 워킹 푸어의 현실은 외부의 도움이 없을 경우 현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이 글은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워킹 푸어의 삶, 생활수준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일하는 가구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출밖에 할 수 없는 워킹 푸어의 현실에 대해 알아본다. 이 때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에는 주로 통계청의 2010년 가구동향조사 원자료를 가중치와 함께 사용한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는 워킹 푸어 가구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찰하는데, 주로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 향상을 통해 이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2. 소득과 소비지출로 본 워킹 푸어 가구의 현실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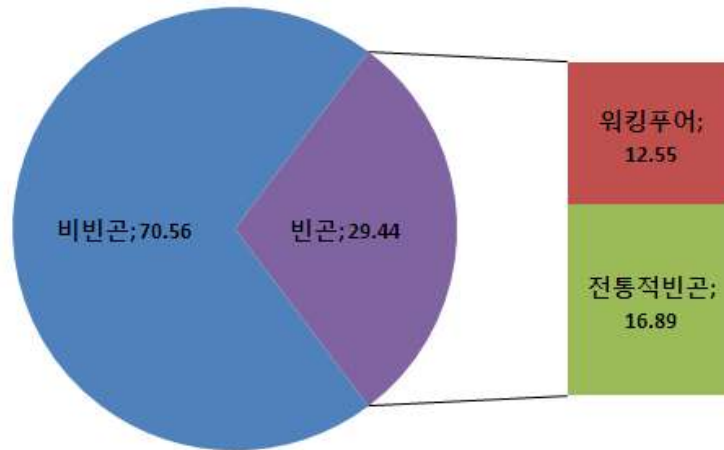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워킹 푸어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워킹 푸어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 또는 그가 소속된 가구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협의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근로능력을 가진 집단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이들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원 전체를 지칭한다(노대명, 2005). 이 글에서는 광의의 개념과 함께 노동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워킹 푸어를 규정한다. 즉,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원이 있다면 그 가구 또는 가구원 전체를 워킹 푸어로 본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빈곤선인데, 이 글에서는 OECD 국제 비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빈곤 개념을 따른다. 즉, 가구원수의 차이를 고려해 산출한 균등화 가구소득($\frac{\text{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본다.

이 때 가구소득은 OECD와 마찬가지로 가처분 소득(= 가구소득 - 비소비지출(세금, 이자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가구 중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그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워킹 푸어로 규정한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빈곤 및 워킹 푸어 규모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전통적 빈곤 가구의

비중은 16.89%이고,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워킹 푸어 가구의 비중이 12.55%이며, 이들을 포함한 전체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 중 29.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2010년 1분기 국내 워킹 푸어의 규모 (가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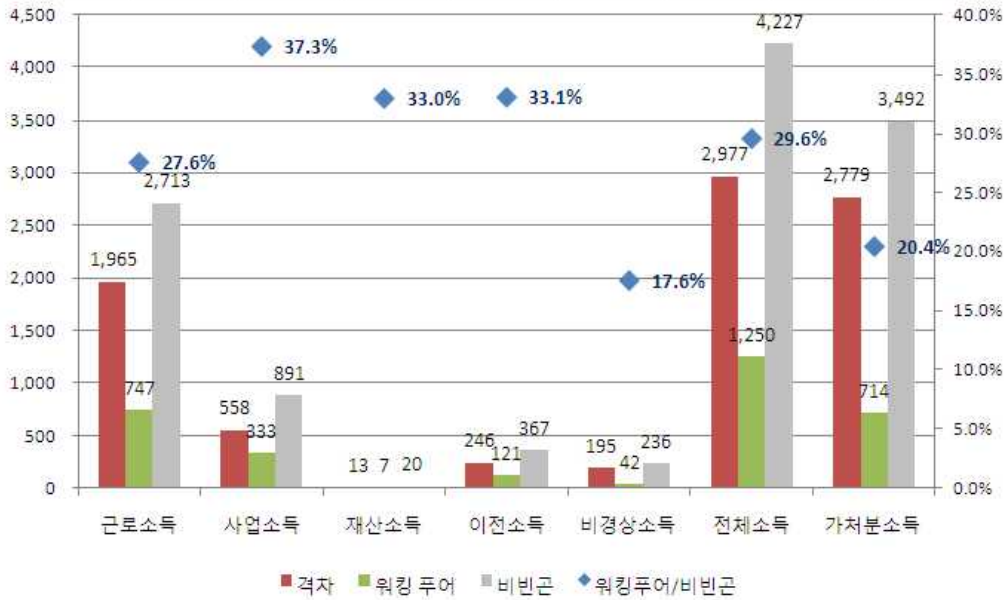
■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비빈곤가구²⁾와 비교해 소득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계산해보면, 워킹 푸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원이고, 이자와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71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빈곤가구 월평균 소득 422만 7천원의 29.6%, 월평균 가처분 소득 349만 2천원의 20.4%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림 2]는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세부 소득 구성을 비교한 것이다.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쪽 모두에서 전체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은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 사이 소득 격차의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사이 근로소득 격차는 196만 5천원으로 전체 소득 격차 297만 7천원 중 66%가 근로소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는 점이 전통적 빈곤가구와 구분되는 특징이지만, 이들의 근로소득은 비빈곤가구의 27.6% 밖에 되지 않는다.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 사이에는 워킹 푸어와 전통적 빈곤가구 사이보다 훨씬 큰 소득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전체 가구 중 빈곤가구를 제외한 가구. 전체 가구 중 워킹 푸어 가구와 함께 전통적 빈곤 가구를 제외하였다.

[그림 2] 소득 구성 (단위 : 천원)



근로소득 외에는 사업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순으로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득항목에서 워킹 푸어 가구보다 비빈곤가구의 소득이 더 컸으며, 이와 동일한 순서로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소득격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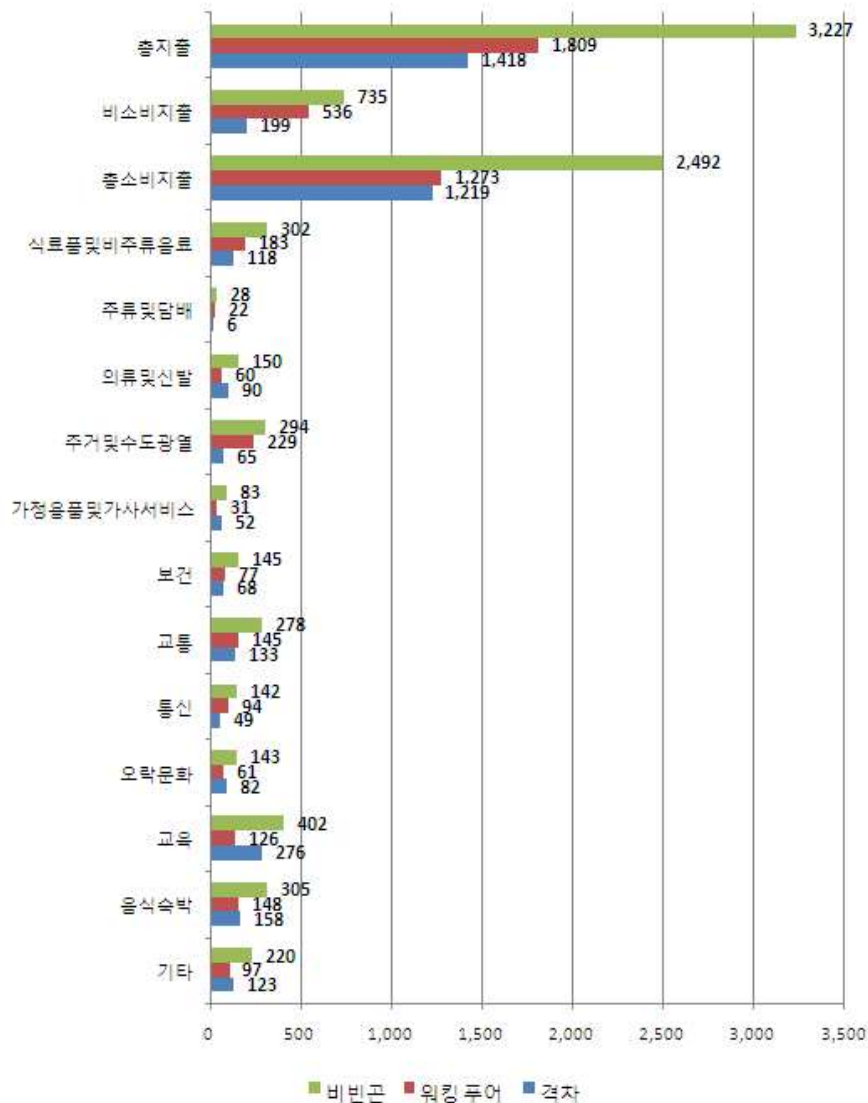
■ 워킹 푸어 가구의 지출

소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소비동향 원자료를 통해 지출을 측정해보면, 월평균 총지출의 경우 워킹 푸어 가구는 180만 9천원, 비빈곤가구는 322만 7천원이었고, 둘 사이 격차는 141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소비 지출에 사용된 총소비지출은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월평균 127만 3천원이고, 비빈곤가구는 월평균 249만 2천원으로 둘 사이 121만 9천원의 격차가 존재한다. 즉, 워킹 푸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비빈곤가구의 절반 정도인 것이다.

[그림 3]은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세부 지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 지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교육지출이다. 워킹 푸어 가구는 월평균 교육비로 12만 6천원을 지출하는 반면, 비빈곤가구의 경우 40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있다. 워킹 푸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비빈곤가구보다 27만 6천원이나 적고, 그

비율은 31.3%에 불과하다. 비율상으로 보면,³⁾ 교육비지출 다음으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37%), 의류 및 신발(40%), 오락문화(42.8%)에 대한 지출 순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보건의료지출의 경우 워킹 푸어 가구의 지출이 비빈곤가구 지출의 절반 정도였으며, 주거 및 수도광열비, 주류 및 담배 관련 지출은 워킹 푸어 가구의 지출비율이 비빈곤가구 지출의 각각 78%, 78.3%로 상대적으로 가장 차이가 나지 않는 소비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지출 구성 (단위 : 천원)



3) 워킹 푸어의 소비지출액이 비빈곤층의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frac{\text{워킹푸어의 소비지출액}}{\text{비빈곤층의 소비지출액}}$ 를 가리킨다.

그리고 소비지출이 아닌 비소비지출의 경우,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 월평균 지출액은 각각 53만 6천원, 73만 5천원으로 19만 9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비율로 봤을 때 워킹 푸어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비빈곤가구의 73% 정도로 51.1% 밖에 되지 않는 소비지출에 비해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과 지출로 본 워킹 푸어 가구의 현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 사이 소비지출에 있어 큰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21만 9천원이라는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비율로 보면 워킹 푸어 가구의 소비지출액은 비빈곤가구의 절반 정도(51.1%)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소비에 있어서의 큰 격차는 소득격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소득 격차는 300만원 정도이며(가처분소득의 경우 격차는 278만원),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은 비빈곤가구의 30%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워킹 푸어 가구는 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비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한달 동안 워킹 푸어 가구가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 사용한 비용은 3만 1천원이다. 이는 비빈곤가구 지출액 8만 3천원의 37%에 불과하다. 그리고 의류 및 신발의 경우 비빈곤가구가 한달에 15만원을 지출하는데 반해, 워킹 푸어 가구는 그것의 40%인 6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식료품 중 과일이나 유제품에 대한 소비지출의 경우 워킹 푸어 가구는 비빈곤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비빈곤가구의 월평균 오락문화비가 14만 3천원인데 반해, 워킹 푸어 가구는 6만 1천으로 8만 2천이나 차이가 났다. 이는 비빈곤가구의 42.8%에 불과하다.

즉, 워킹 푸어 가구는 생활에 필요한 가전용품이나 가사소모품에 대한 지출, 의복, 신발과 같은 제품 구입비,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 수준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이다. 이는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적은 소비지출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문화생활에 충분한 지출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워킹 푸어 가구가 직면해 있음을 가리킨다.

4) 소비지출의 격차보다 소득에서의 격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저축을 할 수 없는 워킹 푸어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비나 보건의료비 경우에도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 사이 지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항목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교육비의 경우, 비빈곤가구가 월평균 40만 2천원을 지출하는데 반해, 워킹 푸어 가구는 12만 6천원, 31.3% 수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학업 중인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겠지만, 소득격차에 따라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교육비에 많은 돈을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득격차에 기인한 교육서비스 공급의 차이는 향후 워킹 푸어 가구 자녀와 비빈곤가구 자녀 사이의 학력 격차로 발현되어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 가구 사이 보건의료비 지출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월평균 7만 7천원을 지출하는데 비해, 비빈곤가구의 경우 그것의 두 배 정도인 14만 5천원을 지출한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가구원 수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지만, 소득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아프지 않아서, 질병을 앓는 사람이 없어서 보건의료비 지출이 적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건비 지출이 적은 것이라면,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 사이 건강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낮은 수준의 소비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함께, 워킹 푸어 가구가 직면하고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지출보다 소득이 더 큰 현실이다. 워킹 푸어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80만 9천원으로 월평균 소득 125만원보다 55만 원 9천원이나 더 많다. 이는 다수의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일을 하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다른 도움 없이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가리킨다. 비빈곤가구에서는 월평균 지출이 소비보다 많은 가구의 비중이 20.8%인 반면, 워킹 푸어 가구는 절반이 훨씬 넘는 61.6%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분석에 따르면,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경우는 18세 미만 자녀, 특히 초중고에 다닐 연령대의 자녀가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해결방안

워킹 푸어 가구의 문제는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수준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다시 낮은 생활수준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엄격한 적용

최저임금제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하한을 설정하는 노동시장제도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등장한 이후 1896년 호주 빅토리아주로 전파되었으며, 1909년에는 영국에서도 도입되었다.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최저임금제가 마련되었고, 미국 역시 1938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적용하는 방법은 국가들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정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기도 하고, 국가수준이나 산별수준 단체협약의 결과물인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어 왔으며,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쳐 법률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고, 2011년은 이보다 5.1% 인상된 4,320원으로 확정되었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워킹 푸어와 같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주고 있는 많은 단기 시간제 일자리, 아르바이트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체 임금 상승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는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적용이다.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은 “사용자는 당해 연도에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주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213만명(12.8%)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나아가 워킹 푸어를 비롯한 저소득 계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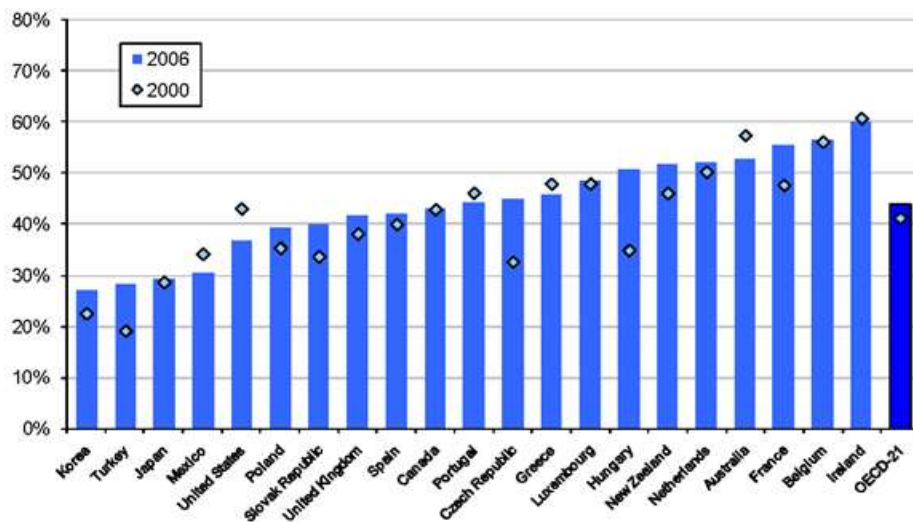
5) 김수현 (2010a) 최저임금법 위반자부터 처벌하자: 213만 명의 최저임금법 국외자들, 새사연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적용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최저임금제에 대해 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강요함으로써 실업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강요되면 노동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증가해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됨으로서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업의 증가는 해당 가구들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가정하고 있는 완전경쟁시장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오히려 최저임금제가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외에도 최저임금제는 임금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소득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순환 구조에도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 또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볼 때 최저임금은 상승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 [그림 4]는 Alan Manning이 cerge-ei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Kaitz 지수⁶⁾이다.

[그림 4] OECD 국가들의 Kaitz 지수



출처 : Alan Manning, cerge-ei 홈페이지

6) Kaitz 지수 = $\frac{\text{최저임금}}{\text{중위임금}}$,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신 평균임금을 이용한다. [그림 4]에서도 중위임금 대신 평균임금을 이용해 Kaitz 지수를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적용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수준 개선 역시 그 긍정적인 효과의 하나일 것이다.

■ 근로장려세제(EITC)의 개선

최저임금제도와 함께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있다. 이는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이 때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를 통해 빈곤가구를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⁷⁾.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노동공급유인책으로서의 효과나 소득재분배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⁸⁾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을 하면서, 노동공급 증가효과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최대적용 소득구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 하는 저소득가구 미취업 여성배우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의 소득분배효과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제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수급가구의 비중이 작으며, 급여율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워킹 푸어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장려세제는 최저임금제도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급가구 제한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부양아동이 없는 가구로 확대시키고, 임금근로자 외 영세·독립자영업자에게로까지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급여율도 더 높여 실질적으로 워킹 푸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부양효과와 함께 목적으로 하는 소득재분배효

7)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8) 이병희·홍경준·이상은·강병구·윤자영 (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과도 거둘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제도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행해지는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의 재정으로 통해 실시된다. 정부는 저소득, 워킹 푸어 가구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은 예산투입을 통해 이들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인상 및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적용, 근로장려세제의 개선과 함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를 통해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 노동자가 워킹 푸어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가 워킹 푸어일 가능성, 또는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카도쿠라 다카시(2008)나 현대경제연구소(2010)는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워킹 푸어로 보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워킹 푸어의 88.6%가 비정규 노동자에 해당한다⁹⁾. 워킹 푸어의 정확한 개념을 사용할 경우와 수치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워킹 푸어 가구에서 일하고 있는 가구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상승시키거나 정규직화는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을 개선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의 규모는 소폭 줄어들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¹⁰⁾, 절반 이상이던 비정규직이 올해는 49.8%로 줄어들었다. 반면, 정규직 임금은 2009년 3월 253만원에서 2010년 3월 266만원으로 13만원(2.0%)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4만원에서 123만원으로 1만원(-0.6%)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8.9%에서 46.2%로 줄어들었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2.7%p 확대된 것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비정규직의 임금은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더욱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임금인상, 정규직화를 통해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

9) 김수현 (2010b)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 현실태

10) 김유선 (2010) 201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7·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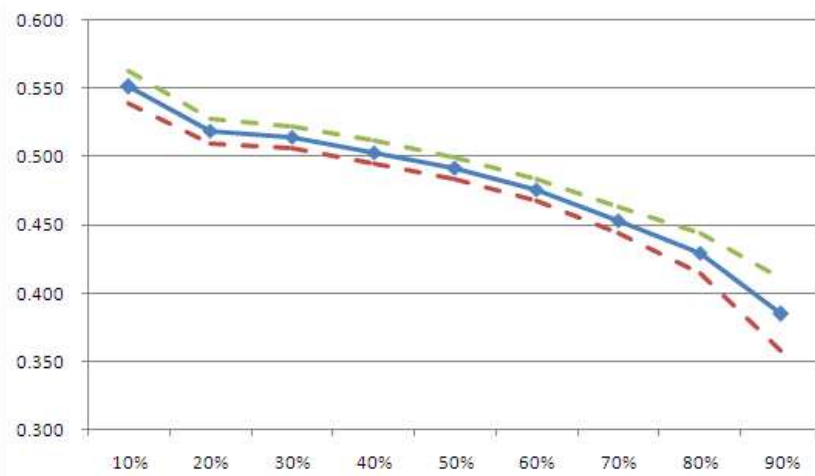
는 최저임금의 인상 및 제도의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지원 등의 정책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기업에 전환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다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 **조속한 제도적 방안의 시행이 필요**

이상에서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실행, 근로장려세제의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 향상은 앞서 소득과 지출을 통해 살펴본 워킹 푸어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즉, 적은 소득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지출을 못함에 따라 낮은 생활수준을 강요받아야 하는 문제나 소비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더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외부의 도움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워킹 푸어 가구의 현실을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전은 사회적 분배구조의 개선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 외에 소득-소비 경제순환이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이것이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되는 순순환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경제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림 5]는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의 결과이다.

[그림 5] 분위수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결과



이는 가구원 수를 통제했을 때 소비지출 10분위별로 소득이 1%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몇 %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소비지출이 작은 계층에서의 소득 증가가 더 많은 소비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출이 작은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에 더 이롭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제도의 실행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비용과 재원이다.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켜 생활수준의 향상 및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상의 제도적 방안들 역시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정부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워킹 푸어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 제도들이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조속히 개선되고, 실행되어야 할 정책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4. 글을 마치며

워킹 푸어는 빈곤의 한 양식이다.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소득이나 지출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노동가구보다는 빈곤가구에 더 가깝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통적인 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책 역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많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이와 함께 워킹 푸어 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워킹 푸어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존의 생각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1997년 이 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의 양극화는 더욱 진행되었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 노동자도 있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줄어들었고,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린 사람의 수는 늘어났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지게 되었고, 이는 일을 하더라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워킹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이들에게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임금의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시행, 근로장려세제의 개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를 통한 임금인상이 중요한 것이다.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수준 개선은 필요한 지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과 보건의료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현재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소득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순환 구조를 만드는데도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워킹 푸어의 현실을 소득과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그러므로 워킹 푸어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역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워킹 푸어의 심각한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들의 소득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전통적 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책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빈곤 가구의 생활수준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실제 전통적 빈곤가구의 경우 워킹 푸어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다. 우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통해 이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이나 보건의료에 있어서도 더 많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워킹 푸어, 빈곤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되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현 (2010) 임금 및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새사연 보고서.
- 김수현 (2010a) 최저임금법 위반자부터 처벌하자: 213만 명의 최저임금법 국외자들, 새사연 보고서.
- 김수현 (2010b)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 현실태, 새사연 보고서.
- 김유선 (2010) 201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7·8월호
- 노대명 (2005)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 카도쿠라 다카시 (2008) 워킹 푸어.
- 현대경제연구소 (2010) 사전적 워킹 푸어 대책 시급하다, 경제주평.